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창원지방검찰청
거창지청
전문공보관 검사 이희욱

보도자료
2021. 6. 24.(목)

전화 055-949-4302 / 팩스 055-949-4558

제 목 하창환 前 합천군수 특가범위반(뇌물) 등 사건 수사결과

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 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 -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실명 공개(제12조 제1항 제1호)
- ※ 2021. 6. 24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금일(6. 24.)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(지청장 이준동)은 하창환 前 합천군수가 재직 당시 관내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고, 그 대가로 관내 2곳의 사토 판매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자격을 검토, 공고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여 하창환을 특가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뇌물)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하고,
- 그 과정에 가담한 공무원 A○○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, B○○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I 피고인

- 하창환(71세, 前 합천군수)
- A○○(○○군 공무원)
- B○○(○○군 공무원)

II

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하창환은, '13. 6. 중순경 합천 지역 골재 채취업체인 (주)□□의 실운영자 C○○으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다음, '15. 12. ~ '17. 9.경 2회에 걸쳐, 사토 입찰 시 (주)□□에 유리한 참가자격을 부가하여 [특가법위반(뇌물)]
- 피고인 하창환은 A○○와 공모하여, '15. 12. ~ '16. 1.경 '황강 내천지구' 사토 판매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(주)□□에 유리하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검토·공고하게 하여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
 - ※ 뒤늦게 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제3자가 낙찰받아 (주)□□이 낙찰받지 못함
- 피고인 하창환은 B○○와 공모하여, '17. 7. ~ '17. 9.경 '황강 건태지구' 사토 판매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(주)□□에 유리하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검토·공고하게 하여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
 - ※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경상남도 감사실 구두권고로 입찰공고가 취소되어 (주)□□이 낙찰받지 못함

III

수사 경과

- '21. 2. 22. 고발장 접수
- '21. 3.~6. 고발인 및 관련자 조사
- '21. 6. 3. 피고인 하창환 주거지, ○○군청 압수수색 등
- '21. 6. 17.~18. 피고인 하창환, A○○ 각 구속영장 발부
- '21. 6. 24. 피고인 하창환, A○○ 각 구속 기소, B○○ 불구속 기소 ☑